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648
----------	-------

발의연월일 : 2025. 11. 27.

발 의 자 : 남인순 · 오세희 · 서영석
허종식 · 박 정 · 이수진
김남희 · 전용기 · 김 윤
이해식 · 박홍근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약사·한약사 국가시험 등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2년간 국가시험 등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의료인,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국가시험 등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하고 있는 타법의 규정과 달라 보건의료 관련 직종 간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약사·한약사 국가시험 등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도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응시제한을 세분화하여 3회의 범위에서 응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제10조).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수험자의 부정행위) ①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등에 응시한 사람이나 국가시험등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등에 응시한 사람 및 국가시험등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부정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에 치러지는 국가시험등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시험등 응시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

은 이 법 시행 이후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등에 응시한 사람이
나 국가시험등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응시자격 제한) <u>제5조제1호</u> 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 하는 자는 국가시험등에 응시 할 수 없다.	제9조(응시자격 제한) <u>제5조</u> 각 <u>호의 어느 하나</u> ----- ----- -----.
제10조(수험자의 부정행위) ① 국 가시험등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시키며, 합격 후에 부정행위가 발견된 자에 대하여는 합격을 무효로 한다.	제10조(수험자의 부정행위) ① 부 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등에 응시한 사람이나 국가시험등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 을 무효로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2년간 국가시 험등에 응시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등에 응시한 사람 및 국가시험등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부정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에 치러지는 국가시험등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 다.